

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9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년 10월 27일

발 의 자 : 박문석 의원외8인

1. 제안이유

-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(2000. 10. 18) 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조직과 직무 범위가 일부 조정됨으로써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중 "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, 성남시농수산물 유통사업소"를 "삭제하고, 성남시분당문화정보센터 다음에 "성남시디자인 지원사업소"를 삽입(안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)

성남시조례 제 호

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 사업소중 "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,성남시농수산물유통사업소"를 삭제하고, 성남시분당문화정보센터 다음에 "성남시디자인지원사업소"를 삽입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(생 략) 2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 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가. 직속기관(생 략) 나. 사 업 소 : 성남시상하수도사업소,성남시 환경녹지사업소,성남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,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,성남시<u>근로지종합복지관</u>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,성남시농수산물유통 <u>사업소</u>,성남시수정문화정보센터,성남시분당 문화정보센터 다. 하부행정기관(생 략) 3. (생 략) 4. (생 략) ② (생 략)	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①(현행과 같음) 1 (현행과 같음) 2 (현행과 같음)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사업소 :성남시상하수도사업소,성남시 환경녹지사업소,성남시종합운동장관리 사무소,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,성남시영생 관리사업소,성남시수정문화정보센터,성남시 분당문화정보센터,성남시디자인지원사업소 다.(현행과같음) 3 (현행과같음) 4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같음)